



**제1조(명칭)**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“기술강사”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(사)대한네일미용사회 정관 제4조 제6호 규정에 의한 기술강사 위촉은 네일미용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기술 향상과 K-Nail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통하여 기술강사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자격)** 네일미용사로서 영업신고증, 네일미용면허증 취득자나 미용사(네일) 자격증을 취득한자와 “본회”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**제4조(업무)** 기술강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네일기술의 개발
2.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 참여
3. 네일기술 보급 및 교육
4. K-Nail 대표자 해외 진출 및 교류 활동
5. 네일자격증 감독과/심사위원 활동
6. K-Nail Contest 감독관/심사위원 활동
7. 각종 행사시 네일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
8. 해외 최신 기술 도입 및 자료 확보
9. 사회봉사 활동 참여
10. 모범 강사 해외 연수 지원
11. 기타 기술개발 및 창작에 관한 사항

**제5조(기술강사 선발 지원 대상)**

1. 2019년까지 민간자격증(네일관련협회) 기술강사를 취득한 자(민간협회들의 자격시험 종료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1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)
2. 미용사(네일)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네일미용업 영업자 및 종사 중이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자
3. 미용 종합면허를 취득하여 네일미용업 영업자나 종사 중이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자
4. 네일 기술이 뛰어나고 네일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
5. 국제 네일 대회 및 국내 대표적인 네일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
6. 네일 기술의 발전과 네일 기술의 전수를 위한 후학 양성에 헌신한 공이 인정 되는 자
7. 네일 문화를 사랑하는 일반 대중 또는 학술적으로 네일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

**제6조(선발 방법)** 기술강사의 선발은 1단계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2단계 기술평가를 실시하고,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3단계 기술강사 위촉을 위한 심화교육 워크숍(자비부담)을 통해 심층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최종 선발 한다.

「**예외 규정**」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%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 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.

**제7조(서류심사)**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여 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기술강사 위촉을 위한 기술평가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.

「**예외 규정**」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%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 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.

**제8조(기술평가)** ① 기술평가는 고난이도 기술시범 및 프레젠테이션(연구과제 발표)과제로 구분하여 평가 한다.

② 고난이도 기술시범은 제1호와 제2호 중 택일하여 시범한다.

1. 판타지: 네일미용 재료를 통한 예술성 창작
2. 테크닉: 네일미용 재료를 통한 고난이도 기술 창작
3. 시범 자는 사전에 제1호와 제2호 중 택일하여 창작을 위한 콘셉트 디자인 예시 및 주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프레젠테이션(연구과제 발표)

1. 네일미용 서비스방법과 기술 및 산업에 관련하여 자신이 논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30분 이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.

④ 평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「**예외 규정**」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%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 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.

**제9조(기술강사 워크숍을 통한 심층 심사)** 2차 기술평가 통과자 중 기술강사 위촉을 위한 심화교육 워크숍에 참가하여 교육과정을 준수한 이수자는 현장에서 합격증인 교육이수 디플로마를 수여한다.

「**예외 규정**」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%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 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.

**제10조(기술강사 정원과 회원의 종류 및 자격)** ① 기술강사 정원은 3,000명 이내로 한다.

② 기술강사는 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술강사 회원은 기술강사 제 규정에 따라 선발되어 소정의 연회비(120,000원)를 합격된 날짜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납부하고 위촉장을 받은 자로 한다.
2. 기술강사 특별회원은 전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연회비(120,000원)를

납부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자로 위촉한다.

3. 연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회장이 승인한다.

③ ②항 제2호의 위촉 규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기술강사 의무교육 및 위촉장 유효기간)** 기술강사 회원은 회계 연도 4월에 실시되는 기술강사 정기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이때 위촉장은 재발급 된다.

**제12조(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 인증)** 기술강사 회원은 “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”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적합한 네일 영업소는 상장형(종이)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만 3년이며,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은 만기 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갱신되고,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면 “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” 인증 등록은 만료되어 소멸된다.

「예외 규정」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%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일부 규정과 절차를 면제하여 “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”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.

**제13조(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 인증)** 기술강사 회원은 “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”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적합한 교육기관은 상장형(종이)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의 유효 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만 3년이며,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은 만기 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갱신되고,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면 “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” 인증 등록은 만료되어 소멸된다.

「예외 규정」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%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일부 규정과 절차를 면제하여 “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”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.

**제14조(기술강사 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

1. 기술강사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
2.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
3.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

**제15조(탈퇴, 제명, 자격상실, 자격정지)** ①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술강사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기술강사 회원이 (사)대한네일미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제14조(기술강사 회원의 의무)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강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계연도 마다 1회 실시하는 의무교육(워크숍)에 참가하지 않을 때
2. 행정관청으로부터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소당했을 때

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기술강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1. 기술강사 본인이 요청할 때
2. 행정관청으로부터 자격증이나 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정지되는 때
- ⑤ 탈퇴·제명·자격상실·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기술강사 회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하는 때에는 기술강사 회원은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-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기술강사 선발 지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)** 기술강사 지원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.

1. 기술강사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기술강사 제 규정 동의
2. 미용사(네일)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필수)
3. 네일숍 재직증명서 또는 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자)
4. 네일 전문 강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자)
5. 민간 기술강사 자격 증명서(민간협회들의 자격시험 종료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1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) 해당자
6. 국제 및 국내 네일 대회에서 수상한 증명서(해당자)
7. 기타 공식적으로 네일기술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자)